

대 회 규 정

- 제1조 본 대회는 제32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라 칭한다.
- 제2조 본 대회는 (사)대한하키협회가 주최한다.
- 제3조 본 대회는 매년 1회씩 개최하며, 대회일자 및 장소는 주최 측에서 결정한다.
본 대회 참가자격은 다음과 같다.
- 제4조 1.대한하키협회 2018년도 선수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필한 단일 팀 이어야한다.
2.지도자(감독,코치,트레이너) 및 선수는 한 팀에만 등록하고 참가신청 할 수 있다.
- 제5조 본 대회 경기방식은 중등부, 고등부, 대학부, 일반부로 구분하여 토너먼트로 실시한다.
- 제6조 본 대회 경기시간은 중등부, 고등부, 대학부, 일반부 총 60분(15분*4쿼터)으로 한다.
(1쿼터 종료 후 2분 휴식, 2쿼터 종료 후 10분 휴식, 3쿼터 종료 후 2분 휴식)
단, 페널티코터는 심판 시그널부터 공격 시작 전까지 경기시간이 정지된다.
1. 무승부로 종료될 경우 페널티 슈트-아웃(Shoot-out) 5회를 실시하여 승자를 결정한다
 2. 하프타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으며,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운영본부 경기감독관(T0 등)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.
- 제7조 본 대회 경기 시작 시에 각 팀은 11명의 선수가 출전하여야 하며, 경기진행 중에는 경기장에 최소 8명의 선수가 있어야 한다. 이를 위반 시에는 경기를 종료시킨다.
(이 경우에 상대팀에게는 득실차이가 없을 경우 5:0으로 승리한 것으로 처리하고, 득점차가 발생 시에는 종료되는 시점의 득실에서 5골을 가산하여 승리한 것으로 처리한다)
- 제8조 본 대회 경기도중 일몰 또는 기타사유로 경기진행이 불가능할 시는 주최측이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갖되 득점차가 있을 시에는 잔여시간의 경기만,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시간의 경기를 갖는다.(페널티 슈트아웃도 잔여경기 시간에 속한다)
- 제9조 선수교체는 전 경기시간을 통해서 엔트리 18명 이내에서 수시로 교체할 수 있다.
- 제10조 경기도중 또는 종료 후라도 부정선수가 발각되었을 시는 성적여하를 막론하고 팀 실격으로 처리한다.
(경기 중 발각된 팀이 발생할 경우 상대 팀은 자동 승리한 것으로 간주함.)
1. 경기도중 집단적으로 경기장을 이탈 및 경기에 불응하여 심판이 경고한 후 지정한 시간 이내에 출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몰수게임으로 처리하며, 본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.
(몰수게임으로 처리 될 경우 그 대회 모든 성적은 무효 처리한다)
 2. 대회기간 중 옐로카드를 3회 당한 선수는 당해경기는 물론 다음 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.
 3. 완전퇴장을 당한 선수는 당해경기는 물론 그 대회 잔여경기에 출전 할 수 없으며 사안에 따라 본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.
 4. 벤치에서 퇴장 당한 지도자와 일시퇴장(옐로카드 3회), 완전퇴장(레드카드) 선수는 개인상 수상 대상에서 제외 한다.
 5. 본 대회의 관련된 각종 이의신청(부정선수, 심판판정, 경기장 질서문란)은 경기 중 또는 경기 종료 후 30분 이내에 육하원칙에 따라(단장.부장.감독 명의로) 이의 신청료 50만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.
이에, 사안은 경기위원회(T.D, A T.D, U.M)에서 결정한다. 단,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한하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.
 6. 팀 벤치에 감독, 코치가 특별한 사유없이 벤치를 이탈할 시는 “경기 중 시행규칙”에 의거 처리한다.
 7. 상기사항 이외 발생하는 사항은 “경기중 시행규칙”에 의거 처리한다.
- 제11조 본 대회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불참한 팀은 대한하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.
- 제12조 본 대회 우승 팀에게는 우승기를 수여하며 우승기는 차기 대회 시까지 보관하였다가 다음 대회에 주최 측에 반환하여야 한다. 단, 보관도중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변상할 의무가 있다.
- 제13조 본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본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주최 측에서 추가 결정한다.